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98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9.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5. 8. 29.

다. 상정·의결일자: 2025. 9. 1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가. 제안이유

2025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을 돌봄 서비스와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다. 위탁 추진 필요성

- 1)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
- 2) 돌봄 서비스 및 시설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

라. 주요내용

1) 위탁대상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종사자	정원	시설현황
재위탁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고성읍 송학로 47-3 공공실버주택2층	164.5 ㎡	2명	20명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실 등

- 2)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2026. 1. ~ 2030. 12.)
- 3) 위탁사무내용: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관리·운영 전반
 - 아동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및 돌봄 상담, 정보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등
- 4)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 5) 소요예산: 119,743천 원 정도(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기준)
 - 인건비: 84,143천 원(시설장 1명, 돌봄선생님 1명)
 - 운영비: 35,600천 원(관리비 및 프로그램비 등)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바. 추진일정

- 2025. 8.: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5. 9.: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 2025. 9.: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5. 10.: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
- 2025. 11.: 위·수탁 협약체결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월 만료 예정에 따라 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 검토

- 민간위탁 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
- 민간위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시설의 위탁)제2항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적합
- 수탁기관 선정방식 적정성: 공개모집 원칙으로 적정
 -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정
- 위탁 사업예산의 적정성: 국비(균), 도비 예산지원 범위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으로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함.
 - ※ 위탁 연도별(2026년~2030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충족함을 검토함.
-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전 이행
 -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 검토
- 관련 절차 이행 여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다른 사무 방식 수행 가능성 등 7개 항목) 검토 이행하였음

○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